

1995. 12.

光州廣域市西區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總 務 社 會 委 員 會

光州廣域市西區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1995年 12月

總務社會委員會

1. 審査經過

- 가. 提出日字 : 1995年 12月 18日
- 나. 提出者 : 光州廣域市 西區廳長
- 다. 回附日字 : 1995年 12月 18日
- 라. 上程日字 : 1995年 12月 22日
- 마. 開催回數 및 日數 : 1回 (95年 12月 22日)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 企劃監査室長 李 龍 玉)

가. 提案 事由

- '95. 7.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 규정 개정
—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이 “시·도의회의원일비”에서 “시·도의회의원회의수당”
으로 변경

나. 主要 骨子

-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회의수당의 2년분 상당액
-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회의수당의 1년분 상당액

3.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朴 鍾 根)

- 서구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이 '95. 7.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 규정 개정에 따라
- 현행 시·도의회의원에 지급하던 “일비”지급명목이 “회의수당”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후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음.

4. 質疑 및 答辯 要旨 : 생 략

5. 討論 要旨 : 생 략

6. 審査 結果 : 원안 가결

7. 少數 意見 要旨 : 없 음

8. 其他 事項 : 없 음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일비의”를 각각 “회의수당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① (생략)</p> <p>1. (생략)</p> <p>2. <u>일비라 함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한다.</u></p> <p>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생략)</p> <p>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 · 도의회의원 당해년도 <u>일비의 2년</u> 분에 상당한 금액</p> <p>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회의원 당해년도 <u>일비의</u> 1년분에 상당한 금액</p> <p>② (생략)</p>	<p>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회의수당</u> ----- -- <u>회의수당</u> ----.</p> <p>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현행과 같음)</p> <p>1. ----- ----- -----<u>회의수당의</u> -----</p> <p>2. ----- -----<u>회의수당의</u> -----</p> <p>② (현행과 같음)</p>
이 하	여 백